

19/20 시즌 리프트 특가 시즌권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산리조트㈜(이하 '사업자'로 합니다)가 판매하는 2019 /2020 시즌 리프트 시즌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의 권리 와 의무 및 이용절차 등 기타 필요 사항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가. 시즌권은 회원권이 아니며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를 위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리프트에 국한된 특별 할인상품입니다.
- 나.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입니다.

제3조 (사용기간 및 적용)

- 가. 시즌권의 사용기간은 하기①,②와 같이 구분되며 서비스 기간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간입니다.

① 기본사용기간 – 1차 : 2019.01.06 ~ 2019.02.14 (40일) , 2차 : 2019.01.24 ~ 2019.02.22 (30일)

② 서비스기간 – 기본사용기간 (1차:40일, 2차30일) 이후로부터 폐장일

나. 이용자의 시즌 기간 중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천재지변, 기상여건(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리프트 정비, 보강제설, 국내·외 스키 관련 대회로 인한 슬로프 제한 등 사업자의 사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권종 이용가능 시간

구분	전일권
적용	시즌 중
이용시간	전체시간대
	단, 기후여건에 따라 심야 운영시기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정설시간 제외
	심야운영시기 : 12월08일 후 ~ 2월중순경 예정 운영 (기후 여건에따라 변경 가능)

제4조 (이용자의 자격, 의무 및 시즌권 관리, 발급)

가.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지며 리프트 탑승시 항상 지정위치(좌측 팔)에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자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표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지정하는 검표원의 고글, 마스크, 헬멧 등 안전 보호장비 탈착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으로 당사에 등록된 본인 외 제3자의 이용은 불가하며 적발 시 압수됨과 동시에 시즌권의 효력도 상실 됩니다.

라. 시즌권은 임의로 대여, 양도, 매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시즌권이 손상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즌권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바. 리프트 이용 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발급 및 리프트권 제공 또는 할인 등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 시즌권 미소지시 리프트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시즌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의한 설명 가입에 한하며, 상품 이용요금을 납부한 후 사업자의 시즌권 담당부서를 통한 정상적인 발급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상품 이용요금을 납부하신 후 이미지파일(jpg)을 규격에 맞추어 1주일 이내에 등재시켜야 합니다.

- 이미지 규격 : 어깨이상이며, 썬글라스, 고글, 모자 등을 탈의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세로 5cm X 7cm, 200 dpi 이상, 300KB ~ 1MB이하 사진)

- 최근 3개월이내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을 등록해야 시즌권 발급이 됩니다.(늘립사진 및 측면사진은 불가)

- 규정 미달 사진 제출시에는 시즌권 제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 유효기간은 2019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0년 폐장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경과 시 만료처리 됩니다.

제5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구매자)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당사 시즌권 담당처에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 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말소(폐기) 처리 됩니다.

다. 기타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벌과금이 부과 됩니다.

라. 관련법률

1)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 329조와 형법 제 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2) 발급받은 시즌권의 위, 변조 행위를 제공하거나, 위, 변조된 시즌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등에 저촉되며,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민, 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시즌권)등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